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5조의4 신설).
-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, 기준가격,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정부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을 보장할 경우 공급과잉의 악순환, 재정 소요 과다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임.

구체적으로는, ①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,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 등으로 생산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고, ② 수급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의 경우 대상품목으로의 생산쏠림→공급과잉→가격하락→정부재정 증가 등의 악순환이 예상되며¹⁾, ③ 대상품목, 기준가격, 차액 지급비율 등을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고, 그 밖에 ④ WTO 감축대상 보조금(AMS)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²⁾, ⑤ 품질에 상관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므로 농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욕 저하 등 원예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수용 불가의 근거로 들고 있음.

- 기획재정부는 적정가격보장제 등 인위적인 가격설정 제도는 WTO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, 적정가격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여 농민과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며, 품질고급화보다 다수확품종 재배 등 과잉생산 유도 및 가격 하락 추세가 고착화되어 농가소득을 국가재정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, 계약 재배·거래 등 사인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사후보전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.

1) 5대채소 가격신축성(가격변화율/공급변화율) 계수(KREI)는 -1.4(고추)에서 -2(마늘·양파), -4.2(봄무), -5.6(고랭지배추) 수준으로 생산량 10% 증가시, 가격은 14%~56% 하락(자료: 농림축산식품부)

2) WTO 농업협정은 생산·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'감축대상 보조'로 분류 및 지급에 제한 중이며, 우리나라는 연간 1조 4,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 설정(※ 5대 채소만을 대상으로 해도 연간 약 1.2조원의 재정 소요 → 한도 초과 가능성이 있음/한국농업경제학회, '23.5월)

(전문위원 김 성 완)